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기준

체	정	2009. 11. 25
개	정	2010. 03. 11
개	정	2011. 08. 10
개	정	2011. 11. 23
개	정	2013. 05. 31
개	정	2014. 07. 07
개	정	2014. 12. 23
개	정	2015. 12. 29
개	정	2016. 07. 27
개	정	2016. 10. 11
개	정	2018. 11. 27
개	정	2019.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에서 위탁관리·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용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제3조(설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본 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이 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이 밖에 보험기획부 실무담당자가 간사로서 평가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1. 보험기획부장, 검사역

2.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원장이 선임한 외부전문가
-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운용담당부서에서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위험관리 분과와 성과평가 분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산운용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험관리·성과평가관리부서 실무담당자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1. 소집일시
2. 출석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출석자의 의견
4. 심의내용, 표결 등의 의결결과

③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이상 대면심의(화상회의 포함)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성과평가관리부서 실무담당자는 위원장에게 개최 안전을 보고하고,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의 주요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의 준수 의무)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회 각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평가위원회 각 위원은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법률자문, 소송대리, 연구과제 등을 수행 할 수 없다.
6.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1호 내지 5호의 의무와 관련하여 <별지 5>의 서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이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위험관리 기준

제8조(용어의 정의) ① "위험"이라 함은 기금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등 각종 불확실성을 말한다.

② "위험관리"라 함은 리스크의 발생원인과 규모를 파악, 분석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위험의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위험관리대상으로 한다.

1. "유동성위험"이라 함은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2. "신용위험"이라 함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말한다.
 3. "시장위험"이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4. "운영위험"이라 함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될 비재무적 위험을 말한다.
- ③"VaR(Value at Risk)"라 함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일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 ④"Shortfall Risk"라 함은 전체 포트폴리오(Total Portfolio)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 수익률이 일정수익률(0% 또는 물가상승률 등)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제9조(위험관리의 기본원칙) ①위험과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②사전적 관리에 의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여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 ③평가위원회 담당부서는 자산운용 담당부서와 업무분리에 의한 상호견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관리방법) ①유동성위험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의 수입·지출규모 등을 예측하여 국가재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예측하지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성자산의 적정 비율을 유지한다.
- ②신용위험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대상 금융기관 선정시 재무안정성,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간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안전성제고를 위하여 유가증권(채권, CP, 주식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시장위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한다.

2. 신뢰수준 95%의 연간 VaR를 산출하여 관리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운영위험 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담당부서는 자체 감사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규정준수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⑤유형별 위험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별지 1>의 위기상황매뉴얼을 적용하여 사전적·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급변 등 필요시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험측정기준) ①위험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측정·평가되어야 한다.

②위험 측정방법은 정기적으로 Feedback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관리 보고체계) ①평가위원회 담당부서는 연간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수여부 등 운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자산운용 담당부서에 전달한다.

제4장 성과평가 기준

제13조(성과평가의 기본원칙) ①성과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절성(Appropriateness) : 기금의 자산운용전략에 부합되는 성과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표준화(Standardization) : 일반적이고 보편화한 방법으로 성과평가 되어야 한다.

3. 지속성(Consistency) : 성과평가 방법과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방법 등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수익률의 적용) ① 시간가중수익률 또는 평잔수익률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② 기준수익률은 <별지 2>에서 정한 수익률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운용상품과 유사한 다른 대체 투자 상품의 운용수익률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중장기자산은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Sharpe Ratio)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성과평가) ① 투자의사결정 과정별 성과분석을 위하여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전략적 자산배분수익률은 연간 자산운용계획 등에 정해진 각 자산별 구성비율과 해당자산의 기준수익률을 가중 결합하여 산출한다.

2. 전술적 자산배분수익률은 각 자산별 실제투자비율과 해당자산의 기준수익률을 가중 결합하여 산출한다.

3. 자산운용수익률은 각 자산별 실제투자비율과 해당자산의 운용수익률을 가중 결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산출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과정별 성과를 평가한다.

1. 전략적 자산배분의 성과는 전략적 자산배분수익률과 목표수익률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2. 전술적 자산배분의 성과는 전술적 자산배분수익률과 전략적 자산배분수익률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3. 종목선택 성과는 자산운용수익률과 전술적 자산배분수익률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③성과평가는 자산운용체계와 리스크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하며 그 방법은 <별지 3>에 따른다.

제16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①평가위원회 담당부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자산운용 담당부서에 전달한다.

②성과부진 요인이 자산운용 과정의 중요한 업무착오, 과실 등에 의한 경우 자산운용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인센티브 지급기준 등) ①지급기준은 <별지 4>에 따른다.

②지급대상은 성과평가 해당연도 기준으로 <별지 4>의 각 부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지급시기는 성과평가 결과 후 익월 이내에 지급한다.

부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1년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위기상황매뉴얼

위기상황매뉴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I. 위험관리방안 개요

□ 위험관리의 목적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 관련규정에 명시된 유형별 위험의 구체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기금자산의 건전한 운용 및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

□ 근거규정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8. 위험관리)
- 위험관리·성과평가기준(제2장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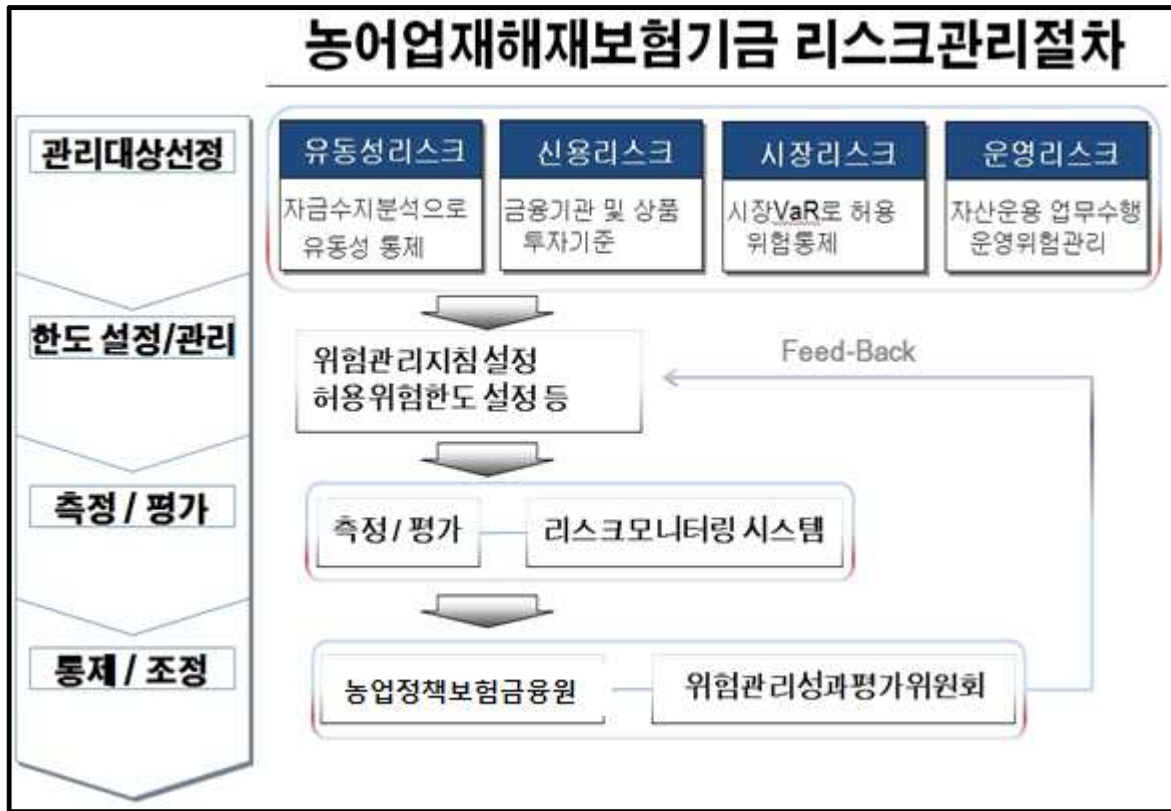
□ 설정내용

- 허용위험한도 등 위험관리 목표 설정
- 위험관리 기준, 관리방법, 측정주기 등 세부지침 마련
- 자산운용 관련 내부감사 및 기준 설정 등

□ 유형별 리스크 관리기준

유형	관리방법	점검주기	보고
유동성위험	월별 자금수지분석	매월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
신용위험	금융기관 평가기준, 투자가능 금융상품 신용등급, 연간 Credit VaR	매월	
시장위험	연간 Market VaR	매월	
운영위험	정기감사 및 제규정 준수여부 확인	매분기	

□ 리스크관리 절차



II. 유동성 위험 관리방안

<정의>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재보험금의 지급이 불가하게 되거나, 자산운용과정에서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하거나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관리기준

○ 관리방법

- 월별 수입·지출 계획점검을 통해 향후 현금 과부족 규모를 추정
- 상시 자금수지 분석과 만기분산 등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 및 관리
- 단기자금 허용위험한도 및 자산배분상 목표비율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함

○ 관리주기

- 매월 : 매월의 현금 과부족 규모 및 예비자금 규모를 추정하여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 검토

□ 유동성위험 관리현황

(단위:백만원)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A)												
지출(B)												
수지차 (A-B)												
예비자금규모												

※ 월별 예비자금 규모는 만기도래자금 및 투자예상금액을 포함

□ 유동성리스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구분	정상단계	주의단계	위험단계
판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분기별 운용자금 규모가 유동성자금 계획 범위 50% 초과 - 운용기관의 변동성 변화가 정상상황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분기별 운용자금 규모가 유동성자금 계획 범위 50%~30% - 운용기관의 신용등급 변화요인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기치못한 자금수요 발생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 운용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시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반기현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투자금지(MMF 등 현금성자산 제외) - 분기내 유동성자금계획의 50% 이상 도달가능 여부 판단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투자금지 - 전체 운용자산 매각으로도 충당이 불가능한 수준의 유동성 필요시 비상조달계획 시행으로 자금조달 - 운용상품의 부분(전부) 매도 또는 환매 조치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

III. 신용위험 관리방안

<정의>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예치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될 위험

가. 금융기관 평가

□ 관리기준

○ 관리방법

• 거래금융기관

- 제1금융권 : 운용대상은행 평가결과에 따라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 자금 배정
- 제2금융권 : 평가대상기관 중에서 평가결과 전체 순위에서 하위 일정 비율을 제외하여 풀을 구성 후 자금 배정

• 채권 : 회사채 A이상, 기업어음 A2이상으로 신용등급 제한

○ 관리주기 : 월별(최근 감독기관 고시자료활용)

* 연기금투자월에 투자한 주식 및 채권은 연기금투자월 규정 적용

□ 제1금융권 평가결과

순위	회사명	총자산 규모순위	BIS자기 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총자산 이익율	신용 등급	총점	평가 등급
1								
2								
3								
4								
5								
6								
9								
10								
11								
13								
14								

□ 제2금융권 평가결과

- 증권사

순위	회사명	영업용 순자본비율	순유동 자산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자산규모	총점
1						
2						
3						
4						
5						
6						
9						
10						
11						
13						
14						

- 자산운용사

순위	회사명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투자신탁 설정액	기금운용 수익률	총점
1						
2						
3						
4						
5						
6						
9						
10						
11						
13						
14						

□ 신용리스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구분	정상단계	주의단계	위험단계
판단 지표	- 예치대상 금융기관 신용등급 현수준 유지 - 보유채권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현수준 유지	-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1단계 하락 - 보유채권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투자가능 등급의 최하등급 또는 1등급 이상 하락	-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2단계 이상 하락 - 보유채권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투자가능등급 아래로 하락 -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
대응 조치	- 채권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및 신용상태 수시 점검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반기현황 보고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채권의 신규투자 금지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 결정 - 필요시 회수조치 후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

나. Credit VaR 관리

□ 관리기준

- 관리방법 : 기금 운용자산의 자금(단기 및 중장기)별 연간 Credit VaR 한도를 95% 신뢰수준하에서 설정 및 관리
- 관리주기 : 월별(반기별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정기 보고)
- 기타사항 : 1) Credit VaR 한도 소진율 초과시 위험관리·성과평가 위원회에 수시 보고
2) Credit VaR 측정방법 및 허용위험한도 변경 필요시,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심의 후 변경 가능

< Credit VaR 허용위험한도 설정 >

- 예치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한을 A등급으로 하여 최대 위탁 가능액에 대한 예상외손실위험(Unexpected Loss) %VaR를 Credit VaR 허용한도로 설정

* 예상외 손실위험(Unexpected Loss) = $1.96 \times (\sqrt{(a \times (1-a)) \times b \times c \times \sqrt{12}})$
 (a : 신용등급별 월간부도확률, b : 부도시 손실율, c : 예치금액)

□ 허용위험한도 설정

(단위 : %)

구분	연간 허용한도	비고
단기(1년 미만)	%	
중장기(1년 이상)	%	

□ 연간 허용한도 대비 VaR소진율 추이

(단위 : %)

구분	VaR 한도	'00년 0월		'00년 0월		'00년 0월		'00년 0월	
		VaR%	소진 비율	VaR%	소진 비율	VaR%	소진 비율	VaR%	소진 비율
단기									
중장기									

□ Credit VaR 관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구분	정상단계	주의단계	위험단계
판단 지표	- Credit VaR한도 소진율 80%이하	- Credit VaR한도소진율 80%~100%	- Credit VaR한도소진율 100%초과
대응 조치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반기현황보고	- 시장상황 및 한도소진 원인파악 후 대응방안 마련하여 보고 - 예치기관의 채무 불이행 등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부분(전부) 매도 또는 환매에 대한 가능성 1차 검토	- 초과사유 및 향후 계획을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에 보고후 조치 - 예치기관의 채무 불이행 등 가능성에 대한 2차 전문가 의견수렴 -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부분(전부) 매도 또는 환매에 대한 가능성 검토

IV. 시장위험 관리방안

<정의> 금리, 환율, 주가, 유가증권 등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

※ VaR(Value at Risk) : 주어진 신뢰수준(95%)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금액)

□ 관리기준

- 관리방법 : 기금 운용자산의 자금(단기 및 중장기)별 연간 또는 월간 Market VaR 한도를 95% 신뢰수준하에서 설정 및 관리
- 관리주기 : 월별(반기별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정기 보고)
- 기타사항 : 1) %VaR를 우선 적용하여 관리하며 VaR 한도 소진율 초과시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수시 보고
2) VaR 측정방법 및 허용위험한도 변경 필요시,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심의 후 변경 가능

< Market VaR 산출방법>

- 일간수익률 = $[(\text{금일기준가} - \text{전일기준가}) / \text{전일기준가}] \times 100$
- 일간변동성 = $\sqrt{\sum (\text{당일수익률} - \text{일간평균수익률})^2 / (n)}$
- 월간VaR = 익스포저 × 일간변동성(표준편차) × 1.65 × $\sqrt{\text{운용일수}}$
- 연간VaR = 월간VaR × $\sqrt{12}$
- 포트폴리오 VaR = $\sqrt{\sum_i \sum_j (VaR_i \times VaR_j \times \rho_{ij})}$ ρ: 상관계수, ij : 자산유형

< VaR 허용위험한도 설정>

- 최근 3년간 벤치마크 수익률의 %VaR값을 산출하고, 실적형 상품(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최대 허용범위까지 확대된다고 가정시 유형별 %VaR를 VaR허용한도로 설정함

□ 허용위험한도 설정

(단위 : %)

구분	연간 허용한도	비고
단기(1년 미만)	%	
중장기(1년 이상)	%	

□ 연간허용한도 대비 VaR소진율 추이

(단위 : %)

구분	VaR 한도	'00년 0월		'00년 0월		'00년 0월		'00년 0월	
		VaR%	소진 비율	VaR%	소진 비율	VaR%	소진 비율	VaR%	소진 비율
단기									
중장기									

□ 시장리스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구분	정상단계	주의단계	위험단계
판단 지표	- VaR한도 소진율 80%이하	- VaR한도소진율 80%~100% - 운용상품의 변동성이 벤치마크대비 10~30% 초과시	- VaR한도소진율 100%초과 - 운용상품의 변동성이 벤치마크대비 30%초과시
대응 조치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반기현황보고	- 시장상황 및 한도소진 원인파악 후 대응방안 마련하여 보고 - 운용상품의 변동성 확대여부 및 운용기관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부분(전부) 매도 또는 환매에 대한 가능성 1차 검토	- 5영업일 이상 지속시 초과사유 및 향후 계획을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후 조치 - 운용상품의 변동성 확대여부 및 운용기관 신용등급하락 가능성에 대한 2차 전문가 의견수렴 -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부분(전부) 매도 또는 환매에 대한 가능성 검토

V. 운영위험 관리방안

<정의> 자금운용과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부통제제도, 전산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 비재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

□ 관리방법

- 여유자산 운용시 정부의 전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수입관, 지출관, 재무관의 내부통제절차로 관리
- 실물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상유무를 확인
 - 내용 : 재고조사, 금융기관잔액증명서 등
 - 주기 : 정기(분기1회), 수시(필요시)

□ 실물자산내역 검토

상품유형	금융기관	개설일	만기일	말잔액(억원)	평가액(억원)	잔액/평가액 일치여부
단기						
중장기						
합 계						

□ 운영위험 체크리스트

구분	세부항목	여부	특이사항
자금 운용 관리	자금운용담당자의 자산운용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보유채권의 신용등급은 적정한가?		
	운용대상자산의 범위 및 직무전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간접투자자산 거래기관의 선정 및 해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유가증권의 만기관리는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투자관련 의사결정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가?		
자금 결제	기금운용관련 의사결정 기록물 및 결재자료의 보관 유지가 적절한가?		
	자금결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외부일 임/위탁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은 적정한가?		
	위탁운용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실물 관리	보유 중요증서는 안전한 금고에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보관실물과 중요증서관리장부는 일치하고 있는가?		
불건전 행위 금지	자금예치시 금리 입찰, 수수료 덤핑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용한 투자업무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투자정보의 제3자 누설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자금운용자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정보/ 보안 및 기타	자금 운용 및 보관관리에 사용하는 인감은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각종 계약서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절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경영진 및 각종 위원회에 정기보고를 실시하고 있는가?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는가?		

□ 운영리스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구분	정상단계	주의단계	위험단계
판단 지표	- 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결과 특이사항 미발생시	- 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결과 특이사항 발생시	- 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결과 중대한 사항 발생시
대응 조치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반기현황 보고	- 원인파악 및 계통보고 - 관계자에 대한 주의통보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 - 관계자에 서면통보 및 징계여부 결정

<별지 2> 성과평가 기준수익률

□ 기준수익률

- 자산운용의 성과를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자산운용에 반영 (Feedback)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 기준수익률
 - 정의 : $\sum(\text{자산군별 기준수익률} * \text{자산군별 투자비중})$
 -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

구 분		벤치마크지수 <small>참고1</small> 기준수익률	
현금성(3개월미만)		-MMF 평균수익률	
유동성 (3개월이상~ 1년미만)	확정금리형	-3개월이상~6개월미만 : 정기예금 6개월미만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정기예금 6개월~1년미만	
	단기실적 채권형	-국공채지수(3개월 이상~1년 미만)×국공채투자비율+회사채 지수(3개월 이상~1년 미만)×(1-국공채투자비율)	
중장기 (1년이상)	확정금리형	-1년이상~2년미만 : 정기예금1~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 정기예금2~3년미만	
	국내채권 투자	간접투자 (채권형), 직접투자	-국공채지수(1년 이상~2년 미만)×국공채투자비율+회사채 지수(1년 이상~2년 미만)×(1-국공채투자비율)
	혼합형펀드 (국내 채권·주식)		-국공채지수(1년~2년)×(1-주식투자비율) + KOSPI × 주식 투자비율
	국내주식 투자	간접투자 (주식형)	-KOSPI × 주식투자비율 + 콜금리지수(1-주식투자비율)
직접투자		-KOSPI	

※ 정기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고시 평균금리, 채권형지수는 매경BP종합, KAP채권지수, KIS종합 채권지수 등 사용가능함

1) 기준수익률은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실현수익률을 말함

<별지 3> 부문별 성과평가 기준

□ 자산운용 부문 (운용지원 포함)

1. 정량평가(50점)

- 전체 자산운용의 초과수익률(40점) (=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

[점수표]

초과수익률 (%p)	0.40 이상	0.35 이상	0.30 이상	0.25 이상	0.20 이상	0.15 이상	0.15 미만
점수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20점	0점

-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실적(10점)

[점수표]

위원회 개최 실적(회)	5	4	3	2	1회 이하
점수	10점	7점	5점	3점	0점

2. 정성평가(50점)

- 현금성자금 최소화(보유수준 등)
- 자산운용 개선 노력 및 적정성
-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수의 충실성(거래기관 선정 기준 준수여부 등)
- 자산운용의 전문성 향상노력(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
- 월별 실적 산출의 적절성(정확도, 적시성 등)

□ 위험관리 부문 (성과평가 포함)

1. 정량평가(40점)

○ 자산운용부문 계량평가 일부 반영(30점*)

- 전체 자산운용의 초과수익률 (=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

* 자산운용 지원 성격임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부문 계량평가 일부인 자산운용 초과성과 환산 반영

○ 위험관리·성과평가 위원회 개최 수(10점)

[점수표]

위원회 개최 실적(회)	6	5	4	3	2회 이하
구분	10점	7점	5점	3점	0점

* 분과위원회 50% 반영

2. 정성평가(60점)

○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능수행의 충실성(실적, 적시성 등)

○ 성과평가의 적시성 및 객관성, 피드백의 적정성

- 체계적인 성과평가 분석, 적시성, 체계 구축 등

○ 위험관리의 적정성 및 개선 노력(리스크 측정모델의 적정성 등)

○ 위험관리·성과평가의 관심 및 중요도, 업무수행 투입 비중

- 평가 관련 참여 및 지원, 운용부서 만족도, 문서기안 수 등

○ 위험관리부문의 전문성 향상(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

<별지 4> 인센티브지급기준

□ 1단계 : 부문별 배분기준

부 문	배분액(율)	1인당 배분금액	비고
자산운용부문(Front)	예산액 기준 이내 위험관리·성과평가위 원회 심의 후 결정	예산액×배분율÷연인원수	
운용지원부문(Back)		예산액×배분율÷연인원수	
위험관리부문(Middle)		예산액×배분율÷연인원수	

□ 2단계 : 1인당 배분금액 x 지급율

부문 점수	95점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급비율(%) (1인당 배분금액 대비)	100	90	80	70	60	50	미지급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실시의 경우 보통 이하 등급에 해당할 경우 미지급함

※ 지급대상은 성과평가 해당연도 기준으로 근무기간 비율에 따라 지급(월미만 절사)

서 약 서

본인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 위촉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다.
-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험관리·성과평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 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발주하는 법률자문, 소송대리,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서 명 :

(인/서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